

- 2024년 -
인천중구가족센터 종합감사 결과 보고

2024. 7.

인천광역시중구
감사실

새로운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중구

2024년 인천중구가족센터 특정감사 결과 보고

인천중구가족센터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례를 시정하고 개선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한 재정운동을 도모하고자 함

I

감사개요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인천광역시 중구 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주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지도·점검등)
- 「2024년도 감사계획」 감사실-452(2024.1.19.)

□ 개 요

○ 감사기간

(사전조사) 2024. 6. 5.(수) ~ 6. 7.(금)

(본 감사) 2024. 6. 10.(월) ~ 6. 14.(금) [5일간]

○ 수감기관: 인천중구가족센터 (지도감독부서: 여성보육과)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범위: 2021. 1월 ~ 2023. 12월 사업 운영 전반

○ 감사방법: 현장방문

○ 감 사 반: 4명 [감사팀장외 3명]

II

감사대상기관 주요현황

□ 기본 현황

1. 시설현황

○ 기관명: 인천중구가족센터¹⁾(센터장: 정광웅)

- 운영방법: 민간위탁

-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인천카톨릭사회복지회

- 위탁기간: 2022.1.1.~2024.12.31. (개소일: 2007.4.19.)

○ 시설현황

구분	가족센터	영종분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치	답동로 23, 3~4층(경동)	운중로14번길 29, 2층(운남동)
규모	· 연면적: 589.65m ² · 3층: 사무실, 상담실 · 4층: 교육장, 기타공간	· 연면적: 208.0m ² · 2층: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기타공간

2. 운영현황

○ 인력 구성현황

(단위:명)

구분	총계	관장 (센터장)	부장 (국장)	과장 (팀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사무직
정원	37	1	1	6	6	13	10
현원	37	1	1	6	6	13	10

○ 연도별 예산 지원 현황

(단위:천원)

기관명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지원액				비고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천중구 가족센터	소계	2,364,923	2,951,519	3,500,935	
	국비	1,166,583	1,514,827	1,839,851	
	시비	596,526	772,722	910,338	
	구비	601,814	663,970	750,746	

※ 보조금 최종 예산액 기준(국시비포함)

1) 인천중구가족센터는 기존 인천중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명칭 변경 (변경일: 2022.4.5.)

3. 주요 사업 현황

- 가족통합서비스 : 부부 관계증진, 가족상담, 자녀생활서비스 등
- 취약위기가족 지원 : 취약가족에 대한 교육, 문화체험, 상담 등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양성 및 파견 등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4개소 운영 (원도심 1, 영종 3)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지원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및 다문화 가족 자녀 학습 지원 등)

Ⅲ 감사 결과

1 총 평

- 인천중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중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인천중구가족센터에서는 보조금 지원으로 가정문제의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정생활 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등 다양한 가족이 가족생활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번 실시한 2024년 인천중구가족센터 특정감사는 인사, 채용 및 조직운영 실태, 보조금 집행관리 실태 전반, 공공재정지급금 운영실태 및 환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 총 1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 시정 3건·주의 6건·개선 1건과 재정상 조치로 추징 500천원,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 2건·훈계 1건의 처분이 요구된다.

② 지적사항 총괄

행정상(건)				재정상(건/천원)			신분상(명)			기관 경고 (건)
계	시정	주의	개선	계	추징	추급	계	징계	훈계	
10	3	6	1	1/500	1/500	-	3	2	1	-

③ 처분요구 목록

연번	분 야	제 목	처분내역			
			행정상 (건)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기관 경고
처분요구 10건			시정3 주의6 개선1	추징 500	경징계2 훈계 1	-
1	기관운영	관련 조례 관리 및 위탁계약 체결 업무 처리 소홀	개선	-	-	-
2	기관운영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소홀	시정	-	-	-
3	회 계	보통 예금 계좌 관리 소홀	시정	-	-	-
4	회 계	가족수당 자체점검 소홀	주의	-	-	-
5	회 계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포인트 조치 미흡	주의	-	-	-
6	회 계	공용차량 유류비 구매 사용 방법 부적정	주의	-	경징계2 훈계 1	-
7	회 계	정기하자검사 소홀	주의	-	-	-
8	회 계	인지세 및 지역개발채권 부과 업무 소홀	시정	추징 500	-	-
9	회 계	수의계약 관련 서류 검토 소홀	주의	-	-	-
10	물품관리	공용차량 운행 기록관리 규정 미흡	주의	-	-	-

IV

세부 지적사항

1. 관련 조례 관리 및 위탁계약 체결 업무 처리 소홀

- 인천중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르는 사회복지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사업 안내(2022)」 II 가족센터 운영 3. 설치 및 운영에서도 위탁계약 체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 여성보육과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위탁기간을 상위 법령 등에 맞도록 현행화하지 않았으며, 운영 위탁 계약서 체결 시 위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개선 (상위 법규에 맞도록 관련 조례 개정)

2.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소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는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가족센터에서는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면서 후원자 및 지원대상자의 실명을 공개로 처리하고, 공고 게시일을 지연하여 공고하는 등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시정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보고서의 후원자 및 지원 대상자명 비공개 처리)

3. 보통 예금 계좌 관리 소홀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2(계좌의 개설·관리) 및 [별표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2. 계좌 운영·관리에는 사업부서장, 관서별 지출원, 회계부서장은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지 않은 계좌는 해지하거나 통·폐합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가족센터에서는 보조금, 공모사업 선정, 후원금 수입처리를 위해 다수의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 및 정리를 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 사업이 종료된 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보조금 예금계좌 2개를 해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시 정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좌 해지 처리)

4. 가족수당 자체점검 소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 따르면 부양가족신고 시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 시 기재된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한 지급사례(특히, 부부공무원이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 인천중구가족센터에서는 가족수당에 대해 연 2회 반기별로 기관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 자체점검을 하여야 하나 매년 초 부양가족신고서 및 증빙서류 징구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어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 자체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주 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 자체점검 연 2회 실시)

5.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포인트 조치 미흡

-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반드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등록 및 사용 의무가 있다. 또한,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 인천중구가족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감사일(24.6.11.) 현재까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카드 포인트를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주 의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는 당해연도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적의 지출)

6. 공용차량 유류비 구매 사용 방법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원인행위 사유 발생 시 보조금 절차 또는 카드 사용 절차에 적합하게 원인행위, 관계서류 확인, 지급명령, 지출행위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인천중구가족센터에서는 공용차량 유류를 구매함에 있어 차량의 유류 구매 필요시 마다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카드사용 절차에 따라 지출하여야 했음에도 사전에 유류비를 선결제하고 이후 필요시 전표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등 유류비 구매 사용 절차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주의(훈계)·경징계 (공용차량 유류비 구매 시 회계처리 절차 준수)

7. 정기하자검사 소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영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계약 건에 대하여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인천중구가족센터에서는 『영종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상담실 신설공사』 외 1건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사실이 있음

- ▶ **조치사항:** 주 의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 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 실시)

8. 인지세 및 지역개발채권 부과 업무 소홀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과세문서	세 액
1~2. 이하생략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이하생략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12. 이하생략	이하생략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에 의하면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의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다.

매입대상	매입기준	비고
1~3. 이하생략	-	
4.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 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	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개정 전 2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조례 제6989호, 2023. 2. 20. 일부개정 (2023.3.1.부터 시행)]

- 이에 따라 2023. 2. 20. 개정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 3. 1.시행)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이 상향되어 2023. 3. 1.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이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대가지급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기준이 된다.

☞ 인천중구가족센터에서는 『영종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상담실 신설공사』 사업은 대가지급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190천원)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운남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공사』는 계약체결 시 수입인지(인지세 20천원) 납부내역과 대가지급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290천원)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시 정 (미매입한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채권 추징)

9. 수익계약 관련 서류검토 소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절 계약의 체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 계약문서의 종류를 확인하여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5절 계약의 이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착수신고서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위의 사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가족센터에서는 내역서(견적서) 상 자재단가, 보험료율 등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검사조서 작성 또는 감독 날인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용역)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인천중구가족센터 취·창업 교육지원 제과제빵』 사업은 수의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미징구하는 등 첨부내역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주 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회계 관련 법규 준수)

10. 공용차량 운행 기록관리 규정 미흡

○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기록관리)에 따르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 서식),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 서식), 차량이력 카드(별지 제1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인천중구가족센터에서는 별도의 유류수불대장 및 차량이력 카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된 차량운행일지만 작성하고 있어, 동승자 확인과 구체적인 유류수불내용 확인 불가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며, 차량의 수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주 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준수)